

2026년도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6년도 제8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 여러분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일

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 임용예정인원(3개 분야, 총 3명)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	근무예정부서
정책지원관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1명	1년	전문위원실 또는 사무처
자치현안지원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1명	1년	입법정책담당관
미디어홍보	지방공업8급 (일반임기제)	1명	1년	의정홍보담당관

※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등 관계 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근무부서는 인력 운영상 추후 변동될 수 있음

2 임용예정직무

임용분야	임용직급	담당 업무
정책지원관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○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○ 의원 서류제출요구, 행정사무감사·조사, 도정질의 관련 자료 작성·취합·분석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 및 자료 작성지원 등 ○ 기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	담당 업무
자치현안 지원	지방행정7급 (일반임기제)	○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○ 주요사업 심층 예결산 분석 및 평가 ○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○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제작 ○ 지방의회 현안 발굴 및 전북 현안 대응 지원
미디어 홍보	지방공업8급 (일반임기제)	○ 의회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및 촬영·편집 ○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및 채널 운영·관리 ○ 유튜브·SNS 연계 홍보 콘텐츠 기획·제작 ○ 의정 콘텐츠 용역 과업 지시 및 성과 관리 ○ 채널 반응 모니터링 및 운영 통계 관리

3 근거 법령 등

- 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, 제31조
나.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다.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)
라. 「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 등 관계법령

4 보수 수준

*기준일 : 면접시험일

가. 연봉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범위에서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
구 분	연봉상한액	연봉하한액
일반임기제 7급	70,782천원	50,272천원
일반임기제 8급	62,096천원	44,296천원

※「고용보험법」제10조 제1항 제3호 및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(임기제공무원)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나. 기타수당 :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함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주소지 · 성별 · 연령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
나. 응시 자격요건

임용분야	직급	임용(응시)자격
정책지원관	지방행정 7급 (일반임7제)	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대학,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법제, 법률해석, 감사, 예산 및 입법 조사·지원, 의정지원, 의원보좌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
자치현안 지원	지방행정 7급 (일반임7제)	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대학,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, 의정지원, 예산 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
미디어 홍보	지방공업 8급 (일반임8제)	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 등에서 SNS (유튜브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 사진·영상 콘텐츠 기획(제작)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

※ 직위별 응시자격요건, 업무내용 등은 붙임의 「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」 참조

※ 자격요건 주의사항

○ 기본사항

- 임용(응시)자격요건에 명시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습니다.
- 임용(응시)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
○ 경력의 범위

- '경력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**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.**
- '경력'은 임용 분야별 자격요건에 명시된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경력만을 의미하며,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중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, 국공립 대학 및 사립 대학에서의 관련분야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인정합니다.
-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**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**되어 있어야 합니다. 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만으로 관련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은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.
- 동일 기간에 중복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합니다.
- 경력기간은 통상근로(전임근무)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의 경우 근무 시간(주당 40시간 근무)에 비례하여 경력을 산정합니다.

※ 단시간 근무(시간제 근무) 경력 산정 방법

- 전임 근무 : 경력의 전부 인정
- 시간제 근무 :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(예시)1년간 주 30시간 시간제 근무 : 9월 인정
- 근무기간 또는 근무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: 심의회를 거쳐 경력 인정 범위 결정
- 전임교수가 아닌 강의경력 : 실제 강의시수 등을 기준으로 경력 산정

-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(근로약정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폐업사실증명서'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임용자격 관련분야와 무관한 경력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
6 시험 일정

구분	시험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발표	면접시험	최종합격자 발표
일정	'26.9.2.(수) '26.9.13.(일)	'26.9.14.(월) '26.9.16.(수)	'26.9.22.(화)	'26.10월(예정)	'26.10월(예정)

-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상황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,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 통보 예정
-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게재 예정

7 시험 방법

가. 1차시험 : 서류전형

-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

※ 서류전형 기준

1. 자기소개서 / 2. 직무수행 계획서
3.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실무경력의 적합성 및 연관성

나. 2차시험 : 직무관련 논술자료 작성 및 면접시험

- 대 상 자 : 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
- 면접내용 :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① (직무관련 논술) 분야별 현안 및 정책 주제에 대한 자료 작성
 - * 응시자가 작성한 논술답안지는 별도 채점하지 않고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
 - ② (면접시험)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, 직무관련 논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등에 대한 면접 실시

- (평정요소)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- (합격자 결정)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
 - ※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
8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안내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9. 14.(월) ~ 2026. 9. 16.(수), 18:00까지(3일간)
- 접수장소 :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1층)
- 접수방법 : **직접방문 또는 등기 우편접수** ☞ 등기 우편접수 대상자는 사전에 인사팀으로 연락바람
 -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
 - 평일 근무시간인 09:00~18:00내에만 접수가능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▶ 주소 : (우54968)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1층)
- ▶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,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(☎063-280-4782)
- ▶ 우편접수자의 경우,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'통상환증서'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(현금X)

나. 제출서류

붙임3 참고

순번	서 류	내 용
1	응시원서	별지서식 제2호
2	이력서	별지서식 제3호
3	자기소개서	별지서식 제4호
4	직무수행계획서	별지서식 제5호
5	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	대학교 졸업증명서, 석·박사학위 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사본
6	경력 및 재직증명서	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등 경력사실 확인서
7	경력증빙서류	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또는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)
8	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	별지서식 제6호
9	주민등록초본	1부(남·여 공통 제출, 남성 응시자는 병적사항 포함)
10	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	해당자에 한함
11	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	해당자에 한함
1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별지서식 제7호

- 가.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다.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라. 모든 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받은 후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법령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마. 응시서류의 기재착오·누락, 연락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, 제출서류에 누락 또는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으며, 접수 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- 바.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(서류 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하는 경우, 기존 응시자는 기제출한 서류로 같음
- 사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.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 신체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(☎063-280-478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

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(정책지원관)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정책지원관	지방행정7급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북특별자치도의회	전문위원실 또는 사무처

주요업무	○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○ 의원 서류제출요구, 행정사무감사·조사, 도정질의 관련 자료 작성·취합·분석 ○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 및 자료 작성지원 등 ○ 기타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 통 역 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논리적·분석적·객관적 사고, 법적 사고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지방의회와 입법·정책지원 등에 대한 지식 ○ 지방의회 회기 운영, 의사진행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관련 지식 ○ 의안 작성·검토·분석 및 입안 지원에 필요한 지식 ○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, 예산, 현안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지식
------	--

임용(응시) 자격요건	관련분야
	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대학, 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, 지방행정, 법제, 법률해석, 감사, 예산 및 입법조사·지원, 의정지원, 의원보좌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

붙임 2

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[자치현안 지원분야]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자치현안지원	지방행정7급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북특별자치도의회	입법정책담당관

주요업무	○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○ 주요사업 심층 예결산 분석 및 평가 ○ 의원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○ 자치현안 정책 포커스 제작 ○ 지방의회 현안 발굴 및 전북 현안 대응 지원 등
------	--

필요역량	○ (공 통 역 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논리적·분석적·객관적 사고, 법적 사고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지방의회 및 도정에 대한 관련 지식 ○ 지방의회 예산결산 기법 및 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○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등 관련 제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○ 정책발굴 및 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지식
------	---

임용(응시) 자격요건	관련분야
	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관련 공공기관, 연구소(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기업체 등에서 <u>지방자치, 의정지원, 예결산 분석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</u>

붙임 3

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(미디어홍보 분야)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미디어홍보	지방공업8급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전북특별자치도의회	의정홍보담당관

주요업무	○ 의회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및 촬영·편집 ○ 유튜브 콘텐츠 업로드 및 채널 운영·관리 ○ 유튜브·SNS 연계 홍보 콘텐츠 기획·제작 ○ 의정 콘텐츠 용역 과업 지시 및 성과 관리 ○ 채널 반응 모니터링 및 운영 통계 관리
------	--

필요역량	○ (공 통 역 량) 윤리의식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논리적·분석적·객관적 사고, 법적 사고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지방의회 및 도정에 대한 관련 지식 ○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기법 등에 관한 지식 ○ 전산장비 및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지식
------	--

임용(응시) 자격요건	관련분야
	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언론사 등에서 SNS(유튜브,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등) 사진·영상 콘텐츠 기획(제작)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(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)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붙임 5

제출 서류 안내

구 분	내 용
1.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제2호)	○ 별지서식 제2호 작성, 자필서명 필수 - 응시수수료 :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7천원(7급), 5천원(8급) *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※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NH농협은행 구입(09:00~17:00/카드결제만 가능) ※ 아래 수수료 면제대상은 증빙자료 제출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3.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 4.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
2.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제3호)	○ 별지서식 제3호 작성, 자필서명 필수 -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관련 경력에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
3.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제4호)	○ 응시분야와의 업무관련성 중심으로 A4 3매 이내로 작성, 자필서명 필수 -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며,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4.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제5호)	○ 별지서식 제5호 활용, 5매 이내 작성, 자필서명 필수
5.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(학위증) 사본 1부	○ 대학교 졸업증명서, 석·박사학위 수료증 사본 -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도 대학 졸업증명서 제출 필요
6. 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1부	○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○ 증명서에는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책,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(날인), 발행기관 직인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※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○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(담당업무 미기재 등)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경력은 불인정됨 ○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제출 ※ 최종합격 후 경력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○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(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),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제출
7.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1부	○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해당기관 홈페이지 발급가능) -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 ○ 소득금액 증명서(국세청 발급) - 인정 받고자 하는 경력기간 전체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별 증명서 필요 ※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중 1종만 제출
8.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(별지서식 제6호)	○ 자필서명 필수
9. 주민등록초본 1부	○ 남·여 공통 제출, 남성 응시자는 병적사항 포함 - 병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
10.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	○ 해당자에 한함
11. 관련분야 연구실적 증빙자료	○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경력을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연구기간 및 연구내용이 명시된 연구실적증명서를 제출
1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(별지서식 제7호)	○ 자필서명 필수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필) 첨부